

아동 학대의 대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목회 상담학적 고려

안미옥

To cite this article : 안미옥 (2013) 아동 학대의 대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목회 상담학적 고려, 복음과 실천신학, 29, 9-35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아동 학대의 대책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와 목회 상담학적 고려

안 미 옥*

I. 들어가는 글

수년 전 미국에 있을 당시 인신매매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다수의 한국 어린 소녀들이 매춘굴 골방에 갇혀 있다가 경찰에 잡혀 가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노예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성매매의 도구로 내몰리며 자기 키만한 총을 끌며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UN의 마약 및 범죄 담당부서(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2-4백만 명의 새로운 인신매매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의 50%는 아동이라고 한다.¹⁾ 아동 학대는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학대가 인신매매나 낯선 외부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이다.

• 논문 접수일: 2013년 07월 10일

• 논문수정일: 2013년 09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0월 02일

*충신대학교

1) Breaking the Chains of Abuse

<http://arkofhopeforchildren.org/issues/child-trafficking-statistics#UjX0csZpkmx>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하에 부모는 자식을 노예로 판다든지 죽일 권한까지 있었던 것이 인류의 고대 역사로부터 나타나고 있고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지구촌 구석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그 반면에 인류가 아동 학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간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196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이 “피학대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란 말로 시작되었으며²⁾ 한국은 아아동 학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없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아동 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요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³⁾

하지만 아동 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아동복지 차원의 사회 문제 영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 학대는 뿌리 깊은 상처의 대물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십자가의 대속함을 입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며 따라서 피해 아동은 물론 가해자와 가족 전체의 치유 사역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학대의 행동을 학대로 인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 신고를 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또한 사례가 어렵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 나온 후에도 가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외부인이 개입하는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분리라고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 논문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아동 학대 이슈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ttp://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about.cfm>

3) 강란혜, 공계순, 도미향, 박인전, 박정윤, 송순, 이경희, 이소희, 조성연, 최영희, 『아동 학대 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19.

를 다룰 때 인터넷상의 아동 학대와 아동 인신 매매 역시 중요한 이슈이지만 제한된 지면에 비해 그 내용이 방대하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주제의 접근에 있어서는 먼저 아동 학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한 후,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목회 상담적 과제가 무엇인지 규명해 볼 것이다. 이상의 주제를 논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러한 이슈들이 거론되었고 필자가 상담가로 활동하던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서 본 주제를 고찰해 가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아동 학대의 이론과 현실

아동 학대에 관해 UN을 비롯한 미국이나 한국에서 내린 정의는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아동 학대 정의를 해석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 딜레마들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아동 학대의 정의와 아울러 사회 문화적 가치에서 오는 이해와 적용의 차이, 아동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아동 학대의 정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 학대의 개념은 1961년 “피학대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로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다가 정서적, 성적 영역을 망라하고 방임도 포함하며 범위가 넓어졌다. 아동 학대를 정의하

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들을 숙고하여 보아야 한다: (1) 아동을 돌보는 데 적합하지 않는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2) 아동 학대의 정의를 내리는 데 위험에 빠뜨린다고 해롭다는 것이 포함할 것인가? (3) 세부 사항이나 심각한 정도, 빈번도, 결과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4) 성인 가해자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학대로 인한 아동의 상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5) 가해자의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6) 학대의 어떤 면이 포함되어야 하는가?⁴⁾

미국은 1974년 아동 학대 예방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을 제정하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최근 수정안은 2010년 12월 20일에 선택된 수정안, the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P.L. 111-320)로서 아동 학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최근 아동에게 가한 행동으로 인해 또는 필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입히는 경우, 성학대, 착취 또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위험에 처한 경우.”⁵⁾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월에 아동 복지법에 아동 학대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법 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⁶⁾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4) Oswald Abel Shanalingigwa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ing Child Maltreatment”. (Ph. D. diss.) (University of Minnesota: June, 2009): 5.

http://conservancy.umn.edu/bitstream/54824/1/Shanalingigwa_umn_0130E_10370.pdf

5) <https://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about.cfm>

6)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joNo=&languageType=KO¶s=1#0000>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한편 우리나라에서 2011년 실시된 아동 학대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의 아동 학대 유형별 개념 정의가 아동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체적 학대: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 발로 차는 행위, 흔드는 행위, 칼로 찌르거나 아이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 아이를 던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

성적 학대: 아동을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혹은 강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의 시각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를 돕도록 하는 행위나 보호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인 경우 법률로 규정한 강간, 성추행, 성매매 혹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성적 행위 혹은 근친상간 등

정서적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서적 손상이나 두려움을 촉발시

키기 위해 가하는 언어적, 상징적 행위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혹은 타락시키는 행위

방임: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아동 유기 등.⁷⁾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가고 법령이 구체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 이유는 첫째 아동 학대를 발견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아동 학대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사후 처리 과정에 겪어야 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2)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아동 학대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혜원이 지적한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과 법제도의 개정과 노력에도 부모에게 귀속하고 부모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가부장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의 영향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과 같은 적극적·소극적 아동 학대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⁸⁾

그런가 하면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졌으나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 친권 상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7) 안재진, 보건 복지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 학대 실태 조사」 (2011), iv.

8) 양혜원, “아동 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영·미제도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 연구」 제27권 (2013. 1호): 245-46.

한 피해 아동은 다시 가해자의 보호 아래 속하게 되는 모순도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아동 학대 사건 6,058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5,039(83.1%)에 달했다. 그런데 전체 피해 아동의 72.6%가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이 부모에게 재학대받은 경우 4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민법상의 친권상실선고나 특별법상 인정되는 보호처분, 친권제한 등의 현행법이 있지만 이 제도들 하에서는 아직까지 피학대 아동들이 다시 학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가 극심하여 일시적인 격리 보호를 하며 친권 제한의 요청이 들어가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2001년부터 10년간 1건에 불과했다.¹⁰⁾

이와 같이 아동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며 그런가 하면 가해자가 그 아동의 보호를 책임진 가족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동 학대라고 하는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 문화적인 전통과 가치관 때문에 아동 훈계와 아동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학대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ICEF에서 조사 발표한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and Family UN Violence Study*가 그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엉덩이를 때리는 것의 훈육 효과에 대한 질문에 59%의 캐나다인들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해로운 행동이며 85%가 훈육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85%의 미국의 응답자들과 90%의 한국인 응답자들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벌과 훈육의 관계성에 대한 각 국민의 반응은 그들이 자라온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훈육을 빙자한 체벌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

9) 보건 복지부, 2011 아동 학대 실태 조사.

10) 양혜원, “아동 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246.

며 체벌의 효과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많은 경우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UNICEF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들이 부모들에 의해서 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맞고, 물리는 등 신체적 상해는 물론 경우에 따라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체벌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¹¹⁾

그런가 하면 UN 인권 위원회에서 아동 체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보고한 바에 나타난 한국의 체벌 실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가정에서의 체벌은 합법하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형법, 가정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보호받는다 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1998년 전국에 1272명에게 전화 설문을 한 결과 91.8%의 아버지가 아동 체벌을 승인하였다. 학교에서 역시 체벌은 합법이다. 2003년의 연구에 따르면 10381 학교에서 7536의 교사들이 체벌을 사용하였다. 4-6학년 489명의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6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벌 받은 경험이 있으며 68.9%의 학생들이 집에서 체벌을 받았다.¹²⁾

아동 보호소에서의 체벌 역시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단 교도시설에서는 형 언도로서의 체벌이나 훈육을 위한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1996년에 아동 권리 위원회에서는 부모와 교사에 의해 교육을 위한 체벌이 지속적이고 팽배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체벌을 금지하는 법적인 대책강구를 추천하고 2003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

11)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6 chapter 3.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and family": 52.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3.%20World%20Report%20on%20Violence%20against%20Children.pdf>

12) Peter Newell, "Briefing from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06).

사가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학대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공공교육이나 캠페인이 이루어질 것을 추천하였다.¹³⁾

세계 아동 권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이나 몽둥이, 신발, 벨트 등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체벌이라는 이름하에 발로 차기, 머리 잡아당기기, 할퀴기, 꼬집기, 물기, 귀에 펀치 날리기, 불로 지지기, 불편한 자세로 버티게 하기, 매운 것 먹이기, 입에 비누 집어넣기, 뜨거운 물 붓기 등도 있어 죄인을 고문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세계 아동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는 체벌은 모욕적이고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며 너무 잔인한 것이 많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벌이 만연하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실제로 자녀 훈육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¹⁴⁾

각각의 사회와 문화가 인정하는 아동 훈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아동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간과하고 있었던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빙산의 일각: 성 학대

UNICEF의 선진국의 성 학대 실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적어도 7%의 여성과 3%의 남성이 어릴 적 성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 학대 가해자의 상당 부분이 가족이나 친척이었다. 즉 여성 성 학대 가해자는 나라에 따라 14-54%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

13) Newell, "Briefing from Global Initiative"

14)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는 25%의 학대자가 가족이나 친척이었다. 대부분 아동들에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만 가르칠 뿐 집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동이 느끼는 수치심, 사건의 은밀성, 그리고 가해자의 부인이 아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 학대에 대해 침묵하게 하며 어른들 역시 성 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성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과 자신이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학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고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성 학대를 받은 소년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가 하면 성 학대를 받은 여성은 오히려 부정하다는 책망과 함께 죽임까지도 당하는 것이다.¹⁵⁾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하면 2011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은 1054건이었다. 이 중에서 지인, 이웃, 친구, 동거 친족에게 폭행당한 것이 23.8%이며 친족에게 당한 것이 9.3%이다.¹⁶⁾ 신고된 1054건만 보아도 하루 약 3명의 아동이 성폭력의 희생이 된다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실제 반복되는 학대와 성폭력의 특수성,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등으로 제대로 신고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검찰청의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과 같은 아동 학대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학대의 사례를 발견하고서도 일반인들은 물론 실무자들마저도 신고에 앞서 종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5) UNICE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and Family」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3.%20World%20Report%20on%20Violence%20against%20Children.pdf>

16) 대검찰청 2012 보고서 심화 통계: 아동 성폭력 95 & 101.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11_2012.jsp

4) 아동 학대 신고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미국에서 아동 학대 신고를 의무 조항으로 만든 것은 1965년이었다. 그리고 1974년에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가 제정되어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전문가들도 신고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모두 신고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한다.¹⁷⁾

사실 아동 학대를 신고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쓰여 있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다.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다양한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첫째, 내담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비밀보장과 상치하게 된다. 둘째, 아동 학대 사실을 들추면 그 가족과 피해자가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고를 망설이게 한다. 셋째, 대부분이 경우가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넷째, 아동 학대 신고 체제의 미흡이나 기존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학대 신고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이세원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 보호기관 사회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아동 학대사례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연구는 실무자들이 겪는 갈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 보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인데 만약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비밀 보장을 요구한다면 상담가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상담에 있어서 비밀 보장 의무에 예외가 되는 조항으로 내담자의 자살이나 타살 의도와 아동 학대가 있으며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아놓기 마련이지만 이로 인해 상담자 앞에서는 무

17) R. H. Woody, & J. D. Woody, *Ethic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Washington D.C: AAMFT, 2002), 129.

엇이든지 털어 놓을 수 있어야 하는 신뢰 형성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이들은 윤리 원칙과 관련된 딜레마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피학대 아동이 미성년자이며 가해자의 협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학대 사실의 조사 과정이나 처벌 과정에서 아동이 입을 이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역시 갈등 상황의 원인이 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딜레마를 형성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은 피학대 아동이 학대를 받은 사실을 조사받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가해자에게 죄값을 물어야 하나 피학대 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 또한 경미한 처벌이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고민을 겪고 있었다.”¹⁸⁾ 한미현 역시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 되어 수사가 시작된 후에 아동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 대질심문을 하거나 증폭된 질문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여 증언을 번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한다든지 비공개 재판, 가해자인 피고인 퇴정후의 심문 등 아동을 보호할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⁹⁾

2011년 실시된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 보고서 역시 이세원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 96.5%가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율은 30% 미만이었다. 신고를 하지 않은

18) 이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66.

19)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아동 학대의 사정 및 사례 판정』 (서울: 집문당, 2006), 252.

이유로는 “잘못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 봐(증거가 확실치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신고 후 부과될 책임 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학대자의 보복, 분노, 비난이 두려워서”의 순서였다.²⁰⁾ 즉 응답자 96.5%가 아동 학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는 있지만 아동 학대의 예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며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 신고는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아동 학대를 가족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은폐했다고 하는 대답이 45.3%, “다양한 학대 행위를 아동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가 33.8%,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 경우가 15.4%이다.²¹⁾

이 보고서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행동과의 괴리를 보여 주고 있다. 특별히 “아동 학대를 가족 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위협에 계속 노출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실무자이며 전문가이면서도 아동 학대를 아동 학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동 학대의 상황을 신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Renninger와 그의 동료들은 “Psychologists’ knowledge, opin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laws.”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서 200번을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²²⁾

20) 아동 학대 실태 보고서, xxxvi

21) 아동 학대 실태 보고서, xxxxxvii

22) S. M. Renninger, P. M. Veach, & P. Bagdade, “Psychologists’ knowledge, opin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law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PsycARTICLES];33(1) (2002), 19-23.

물론 이것이 어떤 상담가는 상담 중에 아동 학대의 경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은 200번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상담가들이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상황 앞에서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속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속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 지침과 강령은 물론 사례 제시를 통해 실제 상황 속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고 도움이 될 원칙과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²³⁾ 그런가 하면 학대자의 보복, 분노, 비난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등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체제와 함께 신고 의무제 등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 구조사, 학교/학원/보육원의 교직원, 의료기사, 의료인, 정신 건강계통 종사자 등이다. 미국의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신고 의무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즉, 미술 치료사, 병원의 행정 담당자, 정신과 의사, 아동 보호자, 교육자, 심리 치료사, 사회복지사, 경찰, 목회자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많은 주에서 목회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마저도 고해 내용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경우 비밀 보장이 제한되거나 혹은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주들이 많은 것이다.²⁴⁾ 한

23) 이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72.
24) Clergy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childwelfare.gov/systemwide/laws_policies/statutes/clergymandated.pdf

국은 아직 종교 지도자들이 아동 학대의 신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그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아동 학대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려

박행림이 지적한 대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직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가운데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교회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경향이 있었다.²⁵⁾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위한 나머지 개개인의 가정을 위한 합당한 목회적 돌봄은 뒷전으로 밀리곤 했다.²⁶⁾ 따라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교회가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자료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권양순의 연구가 그 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구타당하는 여성의 30%가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목사의 도움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대부분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잘 해보라는 충고를 주어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폭행당한 여성들은 목회자들의 무관심에

25) 박행림, “현대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과 기독교 가정 생활 교육”,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23권 (2011 봄호): 195.

26) “한국 교회 다닐 때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데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공부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주입니다. 하지만 미국교회는 사별한 배우자들의 모임, 홀 부모 모임 등 개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제결혼 여성들의 인터뷰 중에서 안미옥, “한국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26권 (2013. 6): 141-75, 161.

실망하고 그의 충고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 생명이 위태로운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혼란 가운데 체면 손상감,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느낌, 불신감,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현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느낌 속에서 더욱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더구나 남편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충고를 듣게 되고 폭행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물론 지금 당하는 고통이 구원과 품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된다.²⁷⁾

작금에 가정 사역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한국교회 안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 장에서는 학대의 원인을 살펴보고 원인별 목회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별히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아동 학대의 원인

필자는 초두에서 아동 학대는 뿌리 깊은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표현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충동적인 경향이 나타난다.²⁸⁾ 실제로 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이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고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자녀 양육에 대한 무지, 적대

27) 권양순, “성장기 부부 폭력 목격 경험이 가정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5권 (2003, 5): 385.

28) 임태진,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성인-아이의 자존감 회복”,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5권 (2003, 5): 278.

29) Theresa Hughes, “The Neglect of Children and Culture: Responding to child maltreatment with cultural competence and a review of child abuse and culture: working with diverse families”, *Family Court Review*, Vol. 44 No. 3 (2006): 501-10. 또한, 2011년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 보고서에도 아동을 학대한 주양육자 집단의 폭력 경험(47.5%)이 아동을 학대 하지 않은 주양육자 집단의 폭력경험(2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감, 부부간의 갈등, 재정적 압박 등으로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⁹⁾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경우 본인은 자기 자식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부모의 공격성을 무의식중에 따라하게 되는 즉 “동일시”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자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사용해버리는 불행을 반복하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물림하는 상처의 원뿌리를 치유하지 않은 채 철저한 신고만으로 아동 학대의 뿌리는 뽑힐 수 없을 것이다.

아동 학대의 원인을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찾아가 하면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아동이 발달상의 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과 보호자 간에 애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학대가 발생할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 장애 아동을 돌보다가 탈진하고 누적된 스트레스에서 오는 방임이나 학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³⁰⁾

그런가 하면 학대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부모에게 자녀의 생존권을 부여한 분위기, 훈육이라는 이유로 체벌 및 물리적 힘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아동 학대를 묵인하거나 확대시킬 수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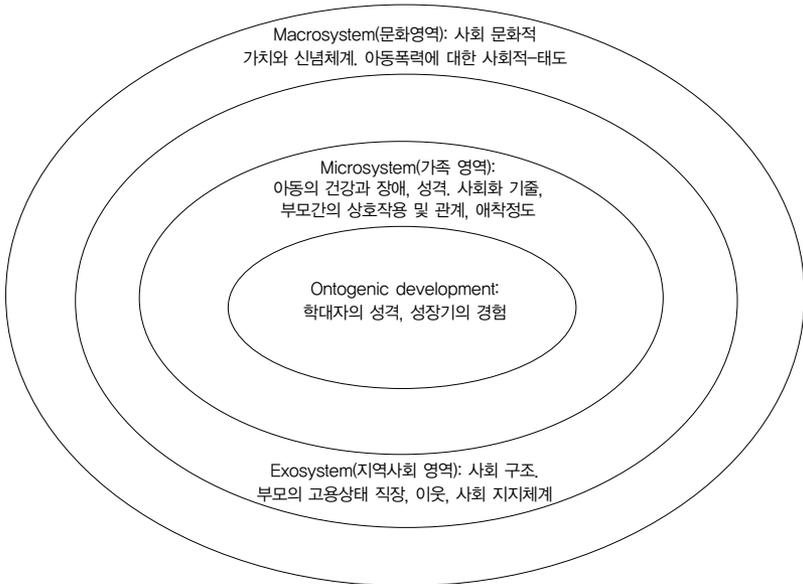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이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 사회가 개인을 불가분의 한 단위로 생각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가족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단위로 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家門: 집의 문)” 또는 “집안”이라는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집안과 밖의 경계선이 분명하고 두텁다. 이러한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폭력

30) 이소희, 도미향, 김민정, 서우경, 『그것은 아동 학대예요』 (서울: 동문사, 2002), 89-103.

31) 이소희, 도미향, 김민정, 서우경, 『그것은 아동 학대예요』, 89-103.

이나 학대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큰 장벽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장벽이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묵인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언급한 아동 학대의 원인들을 Belsky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통합하여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³²⁾



이렇게 아동 학대의 원인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어떠한 목회적 접근이 효과적인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 학대 원인의 영역별 목회적 접근

개인 영역(Ontogenic Development)과 가족 영역(Microsystem)에서

32) Jay Belsky, "Child maltreatment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y* 35(4) (1980): 321.

오는 원인들은 개인상담, 아동상담, 가족 치료 등을 통한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내적 치유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아동이 학대로부터 구출된다 하더라도 아동은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정체감의 혼돈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인 아동과 가해자인 어른 외에도 여타의 가족 구성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상담에 있어서 소통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언어 이외의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접근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개인 상담을 넘어 효과적인 가족 치료가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는 대물림이 될 수 있다. 어릴 적 학대의 경험과 상처가 대를 물려 가는 데는 자녀 훈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본인의 의지를 뛰어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해자 처벌을 넘어선 가해자의 치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들의 궁극적인 치유에 교회는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치유사역에 있어서 조심할 것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이상이나 자살의 위험성 같은 문제를 단순히 성경적 훈련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나 정서적, 신체적 차원을 부인한 채 영적인 문제이니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위험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³³⁾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동 학대에 대한 지역 사회 영역(Exosystem)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갑작스레 부모가 실직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경우라도 주변 사회 지지 체계가 있

33) 윤석주, “목회 상담에서 부부 폭력의 예방과 개입방법”,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권 (2002, 11): 281.

는 가정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기존의 상담 치료와 더불어 구제사역, 긍휼사역, 등을 통한 복지 사역의 지원이 필요하다.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소외된 가정의 진정한 이웃으로 지지체제가 되어 주어야 한다.

특히 문화 영역(Macrosystem)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보는 잘못된 인식, 자녀 훈계라는 명목하에 무차별하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해 올바른 문화 선도와 교육 사역이 필요하다. 폭력을 간과하는 사회, 아동에 대한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생명을 단지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선도해 나갈 책임이 교회에 있다. 또한 성에 대해 금기시하며 침묵하는가 하면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죄로 대응해 온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성학대와 같이 쉽게 도움을 청하기 힘든 문제에 믿고 털어 놓을 수 있는 곳, 보호해 주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동 학대 사례를 감지하거나 발견했을 때의 처신일 것이다.

3) 아동 학대 신고의 윤리적 책임

아동 학대와 관련한 목회상담 시에는 단순히 법령에 대한 지식 이상으로 사례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드러난 아동 학대는 물론이고 의심되는 아동 학대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Kitchener는 윤리적 결정 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직관적 판단단계(intuitive level)와 객관적 평가단계(critical evaluative level)이다. 직관적 판단 단계는 처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다. 직관적 판단이 중요하지만 윤리적 결정 과정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는 두 번

째 단계로 객관적 평가 자료인, 규정, 전문가 협회의 수행강령이나 시행 수칙들을 살펴본다.³⁴⁾

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은 큰 도전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직관과 증거에 기초한 의혹 사이에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신고하는 것과 충분한 자료 수집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상황이 복잡할 때는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³⁵⁾

아동 학대를 신고한 후 가족들이 겪게 될 위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상담가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담가는 아동에게 해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나 공식 기관의 개입이 아동과 가족에게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상담가는 아동이 살아가면서 겪어가게 될 난관들에 즉시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상담가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34) K. S. Kitchener, "Intuition, Critical Evaluation, and Ethical Principles: The Foundation for Ethical Decis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1984): 43-55.

35) S. M. Renninger, P. M. Veach & P. Bagdade, "Psychologists' knowledge, opin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law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PsycARTICLES]*; 33(1) (2002): 19-23.

Ⅲ. 나가는 글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전통과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대한 왜곡된 이해 속에 자칫 아동 학대에 대한 피해가 파묻히기 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동 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인류 역사와 함께 일어나고 있었던 아동 학대가 단지 그 이름표를 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말씀, 즉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시고 다가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뉴스감이 되고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아동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한국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동 학대에 대한 법령이 날로 구체화되어 가고 신고자의 의무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아동 학대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은 물론 예방 차원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크다.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만큼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가족의 역동이 노출되는 곳일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인간사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동 학대의 징후나 전조에 대해서 노출되기 쉬운 곳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 이제 목회 상담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동 학대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상담 전문인은 물론 사역자들의 아동 학대 사정 및 신고의 의무를 자각하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다. 그 훈련의 목적은 가해자를 정죄함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되어야 하고 회복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관심은 물론 사회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아동들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 강란혜, 공계순, 도미향, 박인전, 박정윤, 송순, 이경희, 이소희, 조성연, 최영희. 『아동 학대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 권양순. “성장기 부부 폭력 목격 경험이 가정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5권(2003. 5): 370-88.
- 박행림. “현대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과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3권(2011. 봄호): 186-219.
- 안재진. 『2011 아동 학대 실태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안미옥. “한국 다문화 가정의 정착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개혁신학회. 『개혁논총』 제26권 (2013. 6): 141-75.
- 양혜원. “아동 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 -영·미제도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 연구』 제27권 (2013. 1호): 245-46.
- 윤석주. “목회상담에서 부부폭력의 예방과 개입방법”.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4권 (2002. 11): 232-85.
- 이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 개발센터. 『한국사회복지학』 Vol. 60, No. 1, (2008. 2): 53-76.
- 이소희, 도미향, 김민정, 서우경. 『그것은 아동 학대예요』. 서울: 동문사, 2002.
- 임태진.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성인-아이의 자존감 회복”.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5권 (2003. 5): 272-90.
-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경기: 집문당, 2006
- Belsky, J.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1980): 320-35.
- Haverkamp, B. & Daniluk, J. “Child Sexual Abuse: Ethical Issues for the Family Therapist”. *Family Relations: April* 42, 2. ProQuest Psychology Journals. (1993): 134-39.
- Hughes, Theresa. “The Neglect of Children and Culture: Responding to Child Maltreatment with Cultural Competence and a Review of Child Abuse and Culture: Working with Diverse Families”. *Family Court Review*, Vol. 44 No. 3. (2006, July): 501-10.
- Kitchener, K. S. “Intuition, Critical Evaluation, and Ethical Principles: The

- Foundation for Ethical Decisions in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1984), 43-55.
- Newell, Peter.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and family”. in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2006*: 45-108.
- Renninger, S. M., P. M. Veach, & P. Bagdade, “Psychologists’ Knowledge, Opin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Law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PsycARTICLES];33(1) (2002), 19-23.
- Shanalingigwa, Oswald Abel. “Understanding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iving Child Maltreatment”. Ph. D. diss.: University of Minnesota. 2009.
- Woody, R. H. & J. D. *Woody Ethic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Washington D.C.: AAMFT. 2002.
- 대검찰청. 『대검찰청 2012 보고서 심화 통계: 아동 성폭력』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11_2012.jsp.
- 아동 복지법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No=&languageType=KO¶s=1#0000>
- Breaking the Chains of Abuse
<http://arkofhopeforchildren.org/issues/child-trafficking-statistics#.UjX0csZpkmx>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https://www.childwelfare.gov/pubs/factsheets/about.cfm>
- Clergy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childwelfare.gov/systemwide/laws_policies/statutes/clergymandated.pdf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hrlaw/crc_session.html
- UNICEF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Home and Family
<http://www.unicef.org/violencestudy/3.%20World%20Report%20on%20Violence%20against%20Children.pdf>

【 Abstract 】

Eth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Child abuse cases and Pastoral Counseling

Ahn, Meeock

Child abuse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mankind. Children were, and in some cases still are, regarded as the parents' possessions. Therefore, parents had the authority to sell their children as slaves or even kill them. Though child abuse has long corrupted society, the recognition of this as child maltreatment and legal actions against it are relatively new concepts.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only added cocreate regulations against child abuse a little over a decade ago, in 2000. In parallel, child abuse is also now beginning to be regarded as more than a family matter. It is a social problem and demands immediate attention from society.

In addition to social welfare, child abuse is also in need of pastoral attention for both abused and the abuser. First, child abuse is a sin against God and creature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Second, it is sinful and destructive cycle, continually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busive children grow to become abusive parents, despite their initial determinatio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ir parent's lifestyle. This article seeks to help better understand child abuse, beyond the family, as a social issue and explicate the necessity for active and intimate pastoral care.

Key words: child abuse, ethical dilemma, pastoral car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 국문초록 】

아동 학대는 인류역사와 함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재해 왔지만 아동 학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간 것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한국은 아동 학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없었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항들이 만들어 지고 아동 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요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동 학대의 문제는 단순히 아동복지 차원의 사회 문제 영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 학대는 뿌리 깊은 상처의 대물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십자가의 대속함을 입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며 따라서 피해아동은 물론 가해자와 가족 전체의 치유사역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학대의 행동을 학대로 인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신고를 할 능력이 제한된다고 하는 장벽이 가로 놓여 있다. 또한 어렵게 사례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 나온 후에도 가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외부인이 개입하는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족의 분리라고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며 이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목회 상담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주제어: 아동 학대, 윤리적 딜레마, 목회적 돌봄, 목회 상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